

●領海 및 接續水域法〔1977.12.31
法律第3037號〕

改正 1995.12.6 法律第4986號

第1條 (領海의 범위) 大韓民國의 領海는 基線으로부터 測定하여 그 外側 12海里의 線까지에 이르는 水域으로 한다. 다만,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에 있어서는 12海里이내에서 領海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第2條 (基線) ① 領海의 幅을 測定하기 위한 通常의 基線은 大韓民國이 公式的으로 인정한 大縮尺海圖에 표시된 海岸의 低潮線으로 한다.

② 地理의 特殊事情이 있는水域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點을 連結하는 直線을 基線으로 할 수 있다.

第3條 (內水) 領海의 幅을 測定하기 위한 基線으로부터 陸地側에 있는水域은 內水로 한다.

第3條의2 (接續水域의 범위) 大韓民國의 接續水域은 基線으로부터 測定하여 그 外側 24海里의 線까지에 이르는水域에서 大韓民國의 領海를 제외한水域으로 한다. 다만,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에 있어서는 基線으로부터 24海里이내에서 接續水域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〔本條新設 95.12.6〕

第4條 (隣接 또는 對向國과의 境界線) 大韓民國과 인접하거나 對向하고 있는 國家와의 領海 및 接續水域의 境界線은 關係國과의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兩國이 각기 領海의 幅을 測定하는 基線上의 가장 가까운 地點으로부터 같은 距離에 있는 모든 點을 連結하는 中間線으로 한다. 〈改正 95.12.6〉

第5條 (外國船舶의 通航) ① 外國船舶은 大韓民國의 平和 · 公共秩序 또는 安全保障을 害치지 아니하는 限 大韓民國의 領海를 無害通航할 수 있다. 外國의 軍艦 또는 非商業用政府船舶이 領海를 通航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當局에 事前通告하여야 한다.

② 外國船舶이 그 通航時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의 平和 · 公共秩序 또는 安全保障을 害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第2號 내지 第5號 · 第11號 및 第13號의 行爲로서 關係當局의 許可 · 承認 또는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大韓民國의 主權 · 領土保全 또는 獨立에 대한 여하한 힘의 威脅이나 행사 기타 國際聯合憲章에 具現된 國際法原則을 違反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의 威脅이나 행사
2. 武器를 사용하여 행하는 訓練 또는 練習
3. 航空機의 離艦 · 着艦 또는 塔載
4. 軍事機器의 發進 · 着艦 또는 塔載
5. 潛水航行
6.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에 有害한 情報의 菲集
7.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에 有害한 宣傳 · 煽動
8. 大韓民國의 關稅 · 財政 · 出入國管理 또는 保健 · 衛生法規에 違反되는 物品이나 通貨의 揚 · 積荷 또는 사람의 乘 · 下船
9.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의 排出
10. 漁撈
11. 調査 또는 測量
12. 大韓民國 通信體制의 妨害 또는 設備 및 施設物의 毀損
13. 通航과 직접 관련없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

③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水域을 정하여 外國船舶의 無害通航을 一時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.

第6條(停船등) 外國船舶(外國의 軍艦 및 非商業用政府船舶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第5條의 規定을 違反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當局은 停船 · 檢索 · 拿捕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.

第6條의2(接續水域에서의 관계當局의 權限) 大韓民國의 接續水域에서 관계當局은 다음 各號의 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.

1. 大韓民國의 領土 또는 領海에서 關稅 · 財政 · 出入國管理 또는 保健 · 衛生에 관한 大韓民國의 法規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
2. 大韓民國의 領土 또는 領海에서 關稅 · 財政 · 出入國management 또는 保健 · 衛生에 관한 大韓民國의 法規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

(本條新設 95·12·6)

第7條 (罰則) ① 第5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外國船舶의 乘務員 기타 乘船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情狀이 重한 때에는 당해 船舶·器材·採捕物 기타 違反物品을 没收할 수 있다. <改正 95·12·6>
②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이나 措置를 拒否·妨害 또는 忌避한 外國船舶의 乘務員 기타 乘船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,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.
④ 이 條의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法 이외의 다른 法律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.

第8條 (軍艦등에 대한 特例) 外國의 軍艦이나 非商業用政府船舶 또는 그 乘務員 기타 乘船者가 이 法이나 기타 다른 法令을 違反한 때에는 이의 是正이나 領海로부터의 退去를 요구할 수 있다.

附 則

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4月이내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.

(1978·4·29 대통령령 제8994호에 의하여 1978·4·30부터 시행)

附 則 <95·12·6>

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.

(1996·7·31 대통령령 제15133호에 의하여 1996·8·1부터 시행)